

## 면허증 재발급(DUPLICATE LICENSE) 신청서

(\$10.00 수수료 환급 불가)

수납전용: <b>8001</b>	개체(Entity) #	영수증(Receipt) #	금액(Amount) \$
----------------------	--------------	----------------	------------------

### 안내 사항

이미용위원회를 수령자로 지정한 수표나 우편환(money order)을 (지불 수단 현금 불가) 이 양식과 함께 위의 주소지로 발송 하십시오(불완전하게 작성하신 양식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섹션 A: 면허 정보

#### 면허 종류:

- 이발사 (1001)
- 미용사 (1002)
- 전기분해요법사 (1003)
- 피부미용사 (1004)
- 매니큐어사 (1005)
- 시설 (1007)

#### 면허 번호

글자:

 

번호:

     

성 (개인 면허 재발급용)	이름	중간 이름
----------------	----	-------

영업 시설 이름 (시설 면허 재발급용)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음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이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현재 거리 주소	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번호

   -    -    

이메일 주소

## 섹션 B: 재발급 정보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면허증이 분실, 도난, 또는 소실되었습니다.
- 면허증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 우편으로 발송된 갱신 면허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황 설명: \_\_\_\_\_

\_\_\_\_\_

## 섹션 C: 신청자 인증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해당 직업에 대한 법과 규정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증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이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진술이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

**\*이 신청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위원회에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barbercosmo@dca.ca.gov](mailto:barbercosmo@dca.ca.gov)**

**이미용위원회**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전화 (800) 952-5210 팩스 (916) 575-7281 [www.barbercosmo.ca.gov](http://www.barbercosmo.ca.gov)

**정보 수집, 경로 및 공개**

정보 관례법(Information Practices Act) 민법 제 1798.17 항에 의거하여,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 이름**

이미용위원회

**공식적인 정보 관리 담당 직위**

행정관(Executive Officer)

**주소**

2420 Del Paso Road, Suite 100, Sacramento, CA 95834

**인터넷 주소**

[www.barbercosmo.ca.gov](http://www.barbercosmo.ca.gov)

**전화 및 팩스 번호**

(916) 574-7570 전화 (916) 575-7281 팩스

**정보 관리의 법적 근거**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3 부 10 장을 구성하는 전체를 포함하는 7300 항부터 7457 항.

**요청한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

귀하께서 요청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요청한 정보 중 어느 정보이든 누락하시면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간주되어 거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정보 사용 목적**

요청받은 정보는 인증과 인허가를 위하여 자격 조건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집단과 법인의 법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확실한 신원확인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알려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의 정보 공개**

귀하께서 작성하신 신청서는 위원회의 자산이며, 공인된 담당자가 면허 또는 인증에 대한 귀하의 적격성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귀하의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는 다른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 법 제 6250 항 이하 참조) 및 정보 관례법(Information Practices Act) (민법 제 1798.61 항), 면허증 또는 등록증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는, 법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 양식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과 주소 정보는 공개될 수 있는 공공 정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신분 인증 번호(ITIN) 공개**

귀하의 SSN 또는 ITIN 공개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사업 및 전문업법 30 항과 공법 94-455 [42 U.S.C.A. 405(c)(2)(C) 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SSN 또는 ITIN의 수집이 시행됩니다. 귀하의 SSN 또는 ITIN은 오직 세금 집행, 가족법 17520 항에 따른 가족 부양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 다른 주의 면허와 시험 이력을 상호 인정하는 주에서 정보 요청을 한 경우, 면허와 시험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가 SSN 또는 ITIN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되어 \$1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납세자 정보**

2012년 7월 1일부로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납세자 정보를 이미용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정부의 납세 의무를 지며, 세금을 미납하시면, 귀하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